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실태조사 주의사항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하고(조사대상 기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조사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실태조사 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 '실태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기타사항 참조),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한 후 날인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 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 광명소방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1.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증축 공사로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긴급)광명소방서 다목적훈련센터 증축 공사(건축,기계,토목)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2(수) 10:00 ~ 2026. 8. 18.(화)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8.(화) 13:00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 입찰집행관PC				
공사내용	3층 수직증축(다목적훈련센터) / 증축면적(773.7㎡)				
공사현장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36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32,935,000	1,645,182,000	1,495,620,000	149,562,000	187,753,000	387,862,000

2. 입찰 및 계약방법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입찰은 증축 및 현대화 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같음하며, 도면 및 내역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 조대형(☎ 02-2610-3225)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36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같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공고문 제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결정에서 배제되며,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pm 3\%$ 이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평

가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며, 사실확인을 위한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나라장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해당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아래 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9,625,543원
국민연금보험료	25,930,83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78,795원
퇴직공제부금비	12,555,98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418,755원
안전관리비	12,500,000원
품질시험비	4,878,791원
합계	107,488,694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 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9.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가 ‘10-가’호 또는 ‘10-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가 ‘10-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5.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6.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하고 응찰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따라서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 별표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동의서(별첨 서식)를 개찰일 익일까지 “문서

24” (<https://open.gdoc.go.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태조사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 후 조사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건설정책과 공정건설조사팀 ☎ 031- 8030-4132~9)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요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신고하기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광 명 소 방 서 재 무 관

[별첨]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주 소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증축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경기도지사 귀하